

#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0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8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에 따른 업종 개편 내용 반영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1 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을 정비(안 제2조제2호)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문장 정비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년 7월 22일 ~ 8월 11일(20일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평가 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물류항만과**

##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2” 를 “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2” 로, “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” 을 “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” 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.5톤 이하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.5톤이하)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

제3조 중 “규정을 적용받는” 을 “따라” 로, 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” 를 “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교통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과장 석승호
	팀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팀장 강환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임수현 (790-5095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<u>별표2</u> 제2호 나목 및 「<u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<u>별표 1</u>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<u>별표2</u> ----- 「<u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<u>별표 1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</u> : 「<u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</u>」 제3조 제3호에 규정에 의한 <u>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.</u></p>	<p>제2조(적용대상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</u> : 「<u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<u>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.5톤 이하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.5톤이하)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</u></p>
<p>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) 제2조에 <u>규정을 적용받는</u>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<u>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</u>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.</p>	<p>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) ----- <u>따라</u> ----- <u>개인</u> <u>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</u>----- -----.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3조(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등)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: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
2.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: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### 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1]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(제13조 관련)

구분 \ 업종	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	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
허가기준 대수	○ 20대 이상	○ 1대
사무실 및 영업소	○ 영업에 필요한 면적	○ 없음
최저보유 차고면적	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	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. 다만,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u>최대 적재량 1.5톤 이하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.5톤 이하)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</u>
화물자동차 의 종류	○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	○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

<p>업무형태</p>	<p>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</p>	<p>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. 다만,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, 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</p>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